

콘텐츠 분쟁 조정규정

제정 2011.04.26.
개정 2012.02.15.
개정 2013.07.01.
개정 2015.09.10.
개정 2016.03.28.
개정 2017.02.15.
개정 2018.07.01.
전면개정 2024.07.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콘텐츠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콘텐츠 관련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위원회에 콘텐츠 관련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3. “당사자”라 함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말한다.
4. “사건”이라 함은 신청인이 콘텐츠의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사안을 말한다.
5. “콘텐츠 분쟁”이라 함은 콘텐츠 사업자 간,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말한다. 단 다음 각 목의 분쟁은 제외한다.
 - 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에 관한 분쟁
 - 나.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에 관한 분쟁. 단 외주제작사가 당사자인 경우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간 분쟁

제4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조정결정
 2. 조정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분쟁조정에 관한 기본계획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조정부) ① 위원장은 각 사건마다 조정장을 포함한 1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지명하여 조정부를 구성하고 당해 사건에 대한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부가 위원회의 위임에 의해 제4조 제2항 제1호의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당해 조정부는 위원회로, 조정장은 위원장으로, 조정부의 결정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콘텐츠 분쟁 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조정1분과: 게임- 게임 산업
2. 조정2분과: 영상-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산업
3. 조정3분과: 지식정보-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산업
4. 조정4분과: 캐릭터 등- 만화, 캐릭터, 공연, 출판 산업

②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사 경험 및 학식 등을 고려하여 소속 분과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해촉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보궐위원이 위촉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특정한 전문분야의 사건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당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제2장 및 제3장의 절차 중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또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사무국) ①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국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조사관은 사무국 직원 중에서 사무국장이 지명하며,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등 조정에 관한 업무를 보조한다.

제 2 장 조정의 신청

제10조(조정의 신청) ① 콘텐츠 분쟁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 홈페이지의 신청양식을 입력함으로써 조정신청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그 의사표시의 명칭 및 형식의 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제1항의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접수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법원, 국민권익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업무협력관계가 있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사건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이송사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국제분쟁해결을 위하여 WIPO 중재조정센터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조정의 신청 및 진행 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접수 및 통지)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당해 사건에 대한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한 후 사건번호와 접수일자를 포함한 접수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12조(신청 심사 및 보완 요구) 위원회는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필요한 첨부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심사하고 위임장, 기타 서류의 원본제출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피신청인의 정정 등) 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신청인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신청 취지의 동일성이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피신청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대리인) ①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 및 대리허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호사

2.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3.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자로서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제15조(대표당사자) ① 다수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당사자의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당사자는 대표당사자를 선정·변경 또는 해임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표당사자 선정신고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대표당사자 변경·해임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당사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당사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⑤ 대표당사자는 자신을 선임한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자 조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 조정안의 수락 또는 거부
2. 조정신청의 취하
3. 대리인의 선임

제16조(사건의 분할·병합) ① 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다수인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권고로써 사건의 성질에 따라 사건을 분할 또는 병합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분할 또는 병합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정회의 전 사건의 처리

제17조(조정신청 통지와 답변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부분을 송달하여 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통지하고 조정절차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피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 통지 및 조정 참여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정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피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 답변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조정의 취하) ① 신청인은 조정신청한 사건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조정절차 개시 전에 피신청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취하 또는 취하 간주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조정에 참여중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조정의 불능) 위원회는 당사자의 사망, 소재불명, 연락두절, 피신청인의 폐업 또는 파산 등 조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20조(조정 전 합의 등)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답변서를 수용하거나 위원회를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 전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간 상당한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제18조의 취하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 전 합의 의사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합의의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조정회의 참여의사를

확인하여 조정회의에 사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단 조정회의 상정 전 제32조 제1항 제4호의 조정의 불성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정 없이 즉시 사건을 종료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를 통하여 조정 전 합의가 성립한 경우 합의사항을 통지하여 사건을 종료할 수 있다.

제21조(조정거부)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조정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
5. 다른 조정기관에 조정 신청을 한 경우
6. 조정의 신청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7.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8. 신청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정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9. 범죄 신고, 단순 문의, 정책 건의, 비콘텐츠 분쟁 등 신청내용이 콘텐츠 분쟁이 아닌 경우 또는 콘텐츠 분쟁과의 연관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10. 신청인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11.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하였거나 오로지 피신청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12. 당사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인 경우 등 사건 진행의 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13. 기타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법률·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조정신청의 거부 및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콘텐츠 분쟁이 아닌 사건의 경우 위원회는 사건을 해당 유관기관으로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조정신청이 이첩된 기관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조정처리 기한) ① 법 제30조 제2항의 처리기한의 계산은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에 의한다.

- ② 처리기한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연장하는 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단 제4장의 조정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 ③ 제10조 제4항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사건의 처리기한은 이송 받은 때를 접수일로 하여 전2항에 따른다. 단, 법원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송 받은 사건은 당해 기관에서 요청하는 처리 기한으로 한다.

제 4 장 조정회의의 개최 등

제23조(조정회의의 개최) ① 위원장은 제20조의 조정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또는 조정전 합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제5조의 조정부를 구성하고 조정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조정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조정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조정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조정회의는 서면, 대면 및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 ④ 조정회의는 사무국 조정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

우 조정회의실 이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사실조사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조사, 인과관계의 규명 및 피해액의 산정 등(이하 “사실조사등”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진술 청취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요구
3. 시험검사,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진술 청취
4.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5. 현장조사, 사진 촬영 등 기타 적절한 방법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분쟁당사자, 콘텐츠사업자 또는 참고인(이하 “분쟁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실조사등을 위하여 전문위원, 전문기관 기타 전문가에 대해 조회, 감정,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실조사등이 필요한 경우 분쟁당사자 등에게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기간 등을 조사 3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사실조사등의 과정 중에 발견된 위법, 위규 사항이 있거나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필요시 조사관은 사실조사등이 완료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실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실조사보고서에는 분쟁당사자가 제출한 입증자료가 빠짐없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25조(조정기일의 통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조정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1. 조정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당해 조정회의에 참석하는 조정위원 명단 및 기피절차 안내
3. 관련 증거자료 제출요청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를 조정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27조의 당사자 불출석시 조정절차 및 대리인 출석시 위임장 제출에 대한 사항을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함께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 ③ 위원회가 참고인, 전문위원 기타 전문가를 조정회의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조정위원의 제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다.

- ② 당사자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때에는 조정위원 지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 소요된 기간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위원이 조정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피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⑤ 제척·기피 또는 회피로 조정부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장은 원활한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새로운 조정위원을 충원할 수 있다.

제27조(조정기일 출석) ① 제25조 제2항에 따른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당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관련된 증거자료를 조정부에 제출할 수 있

다.

- ② 당사자는 자신이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4조에 의한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출석한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회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리인은 조정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 대리인 및 참고인 등이 조정기일에 출석한 경우 위원회는 주민등록증 등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본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통보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제5항에 따라 조정기일을 변경한다.
- ⑤ 위원회는 양당사자가 조정회의에 불출석하였거나 불출석 예정인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조정기일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소요된 기간은 법 제30조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조정절차의 비공개) ①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조정회의의 참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정회의의 참관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참관신청서를 조정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제 5 장 조정안의 제시 등

제30조(조정안의 제시) ① 위원회는 조정회의에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조정

안을 제시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수락 여부를 결정하게 하여야 한다. 단 조정안을 당일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시할 수 있다.

② 조정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번호
2. 사건명
3.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조정결정 사항
5. 작성연월일

③ 각 당사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조정 성립) 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수락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조정서의 기재사항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2조(조정 불성립)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조정회의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 수락을 거부한 경우(제30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3.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여 조정이 중지된 경우

4. 조정절차의 개시 후 조정회의의 개최 전, 당사자가 신청서, 답변서 등 상대방의 조정의견에 대한 본인의 의견제출을 상당한 기간 동안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위원회의 합의권고를 거부하고 더 이상의 조정의사가 없다고 답변하거나, 제24조에 따른 자료요청을 거부하는 등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외부연계조정사건의 특칙) 본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법원 등 업무협력기관의 외부연계조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조정서의 작성 및 조정의 효력은 해당 기관의 요청 및 절차에 의한다.

제 6 장 보 칩

- 제34조(송달의 방법)** ① 이 규정에서 정한 문서의 송달 및 각종 통지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팩스 기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 제2항에 의한 조정서의 통지는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35조(조정자료의 관리) ① 조정자료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조정신청서, 답변서 등 조정절차에서 당사자가 생산한 문서
 2. 조정안 및 조정서
 3. 사무국이 생산한 사건처리결과내역 등 조정 관련 문서
- ② 조정자료는 3년간 보관하되,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관리할 수 있다. 단 조정서는 별도 지침에 따라 원본을 보관한다.

제36조(비밀유지) 당사자, 참고인, 조정위원, 전문위원, 사무국 등 조정절차에 참여한 자들은 제35조의 조정자료, 전화 등 관계인 간 업무상 연락내용 및 조

정절차에서 알게 된 타인의 정보 일체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조정사례) 위원회는 콘텐츠 분쟁의 사전적 예방과 해결기준 제안을 위하여 상담, 합의권고, 조정회의 사례를 익명으로 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8조(직무윤리 검증)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39조(조정비용) ①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별표1]의 조정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각 당사자가 제1항의 조정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40조(기타)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 처리 등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5. 9 .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의 명칭) 종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규정을 콘텐츠 관련 분쟁 조정규정으로 명칭 변경한다.

부 칙 <2016. 3.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의 명칭) 종래 콘텐츠 관련 분쟁 조정규정을 콘텐츠 분쟁 조정규정으로 명칭 변경한다.

부 칙 <2024. 7.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39조는 위원회의 별도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시행을 유예한다.

[별표 1]

조정비용(제39조 관련)

조정신청 금액	수수료
1백만 원 이하	0원
1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	30,000원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50,000원
1천만 원 이상	100,000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건	50,000원
※ 복수의 신청취지가 청구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건으로 비용을 합산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조정신청서

콘텐츠분쟁조정신청서			
신청인 <input type="checkbox"/> 성인 <input type="checkbox"/>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조정 규정 제14조 제1항)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명			
전자우편	@	연락처(휴대전화)	
주소			
1. 분쟁조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인의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피신청인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분쟁조정사건 접수통지 및 진행상의 연락은 전자우편, 연락처 또는 주소로 발송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원회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분쟁조정사례는 콘텐츠 분쟁의 사전적 예방과 해결기준 제언을 위하여 익명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 <input type="checkbox"/> 법정대리인 <input type="checkbox"/> 임의대리인(콘텐츠 분쟁 조정 규정 제14조 제2항)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자우편		연락처(휴대전화)	
주소			
피신청인			
성명(기업명)		콘텐츠명	
전자우편	@	연락처	
주소			
신청 내용			
※ 신청내용은 분쟁 발생 시기, 신청취지와 그 이유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사용 가능)			
위와 같이 콘텐츠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첨부 : 관련 증거자료 20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귀중			

대표당사자 선정신고서

사건번호				
<input type="checkbox"/> 신청인 <input type="checkbox"/> 피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성명	연락처
대표당사자(1)		
대표당사자(2)		
대표당사자(3)		

상기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표당사자를 선정합니다.

20

선정자

(날인 또는 서명)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귀중

대표당사자 변경 해임 신고서

사건번호			
<input type="checkbox"/> 신청인 <input type="checkbox"/> 피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성명	변경내용
대표당사자(1)		<input type="checkbox"/> 해임 <input type="checkbox"/> 선임
대표당사자(2)		<input type="checkbox"/> 해임 <input type="checkbox"/> 선임
대표당사자(3)		<input type="checkbox"/> 해임 <input type="checkbox"/> 선임

상기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표당사자를 변경해임합니다.

20

신청자

(날인 또는 서명)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귀중

2000-00000호
사실조사보고서

1. 사건개요

- 사건번호 :
- 사건명 :
- 담당 조사관 :

2. 당사자

가. 신청인

- 성명 :
- 주소 :

나. 피신청인

- 성명 :
- 주소 :

3. 신청취지

4. 사건내용

5. 처리경과

6. 당사자 주장

7. 사실조사 및 기타 사무국 의견 등

조정위원 기피신청서

사건번호			
당사자 <input type="checkbox"/> 신청인 <input type="checkbox"/> 피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기피위원	기피사유

상기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정위원 기피를 신청합니다.

20

기피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조정회의 참관신청서

사건번호		조정회의일	20 . . .
참관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신청사유			
조정회의 비공개 확인 및 비밀엄수 동의	상기 본인은 당해 조정회의를 참관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를 비밀로 유지할 것을 약속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이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와 같이 당해 사건에 대한 참관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참관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귀중

(별지 제8호 서식) 조정안

조 정 안

1. 사건번호 :

2. 사 건 명 :

3. 당 사 자

가. 신 청 인

○ 성 명 :

○ 주 소 :

나. 피신청인

○ 성 명 :

○ 주 소 :

4. 신청취지

5. 조정내용

가.

나.

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_____ (날인 또는 서명)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_____ (날인 또는 서명)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_____ (날인 또는 서명)

조 정 수 락 서

사건번호				
당사자 <input type="checkbox"/> 신청인 <input type="checkbox"/> 피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상기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이의없이 수락합니다.

20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귀중

※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해당 내용으로 조정서가 작성되며, 조정서의 기재 내용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조정서

20 년 월 일	조사관
조정서 정본 ○○○ 송달	

조 정 서

사건번호 :

사 건 명 :

신 청 인 : ○○○

서울시 강남구 ○○동 ○○-○

대리인 ○○○

피신청인 : ○○○

서울시 강남구 ○○동 ○○-○

대리인 ○○○

조정장 위원 ○ ○ ○

기 일 : 200○. ○. ○. ○○:○○

위 원 ○ ○ ○

장 소 : 콘텐츠분쟁조정회의실

위 원 ○ ○ ○

공개 여부 : 비공개

담당 조사관 ○ ○ ○

신청인 ○○○

대리인 ○○○

출 석

피신청인 ○○○

대리인 ○○○

출 석

다음과 같이 조정 성립

조 정 내 용

- 1.
- 2.
- 3.

조 정 신 청 의 표 시

신청이유 및 신청내용: 별지 기재와 같다.

조정장 위원 ○ ○ ○ (날인 또는 서명)

위 원 ○ ○ ○ (날인 또는 서명)

위 원 ○ ○ ○ (날인 또는 서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본 조정서의 기재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별지 제11호 서식)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2024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 IV. 1. 행정기관위원회 신뢰성·투명성 제고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예	아니오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예’ 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 ○ (서명 또는 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서 약 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2024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 IV. 1. 행정기관위원회 신뢰성·투명성 제고

직위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이 경영 또는 취업하고 있는 사업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한 경우 회피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20 . . .

○ ○ ○ (서명 또는 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귀중